

등록사항 [[] 열람] 허가신청서
[[] 복사]

(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기간	15일 이내
등록 의무자	성명	생년월일		
	소속	직위		
	직급 등	전화번호		
열람·복사 대상재산				
복사 부수				
신청 사유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[[] 열람] 를
[[] 복사] 를
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소속 직위 직급 등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
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위임장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위임받은 사람
소속(주소):
직위(직급 등): ()
생년월일:
성명: (서명 또는 인)
년 월 일
위임하는 사람
소속(주소):
직위(직급 등): ()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
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서약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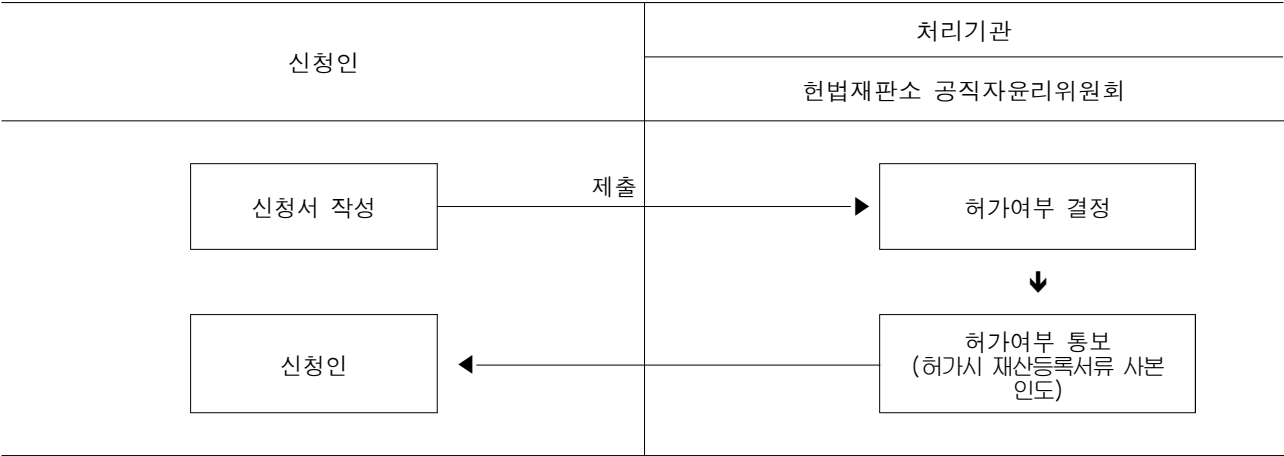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()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등록사항 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(우편송달 금지)하겠습니다.
- 1.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.
- 1. 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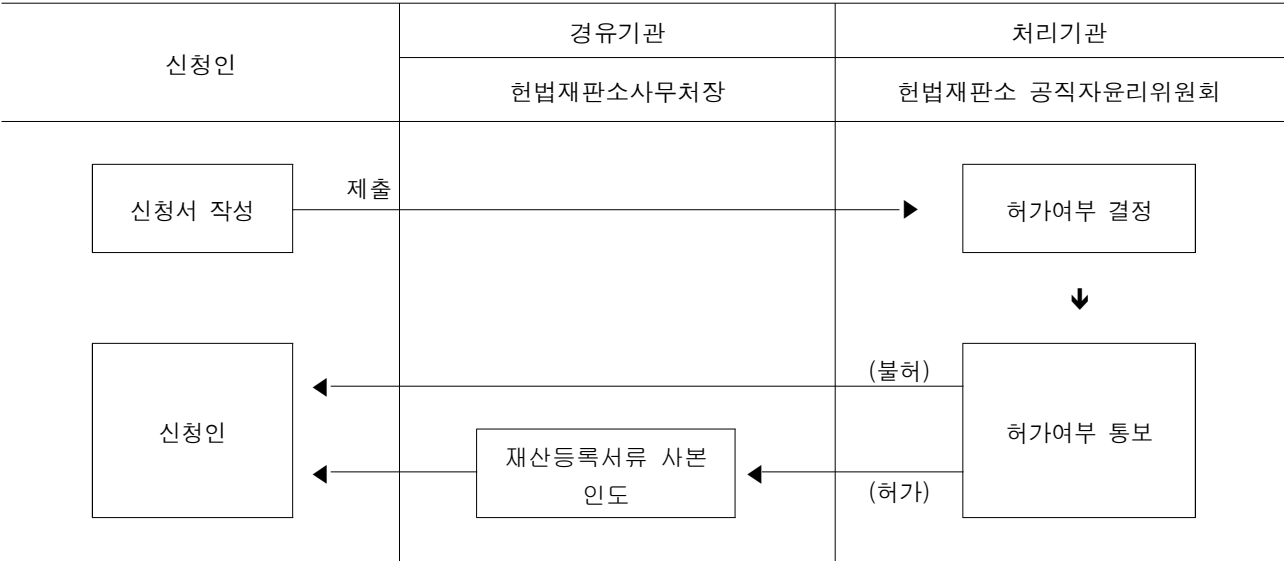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인수자
소속(주소) :
직위(직급 등): ()
생년월일 :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
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업무 처리절차

<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>



<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>



<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>

